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 신설 》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24호)

2025.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제220732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안 제44조의2 신설)	3

I.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제220732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한 위협받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4조의2(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기업도시 입주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기업도시 지역인재”라 한다)을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u> <u>②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는 입주기업의 채용규모,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④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기업도시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u>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기업도시 입주기업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해당 지역 내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여야 함.

또한, 개정안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4조의2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인재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안 제44조의2제3항)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촉진 대책 협조 의무(안 제44조의2제4항)를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행법 제44조1)에 입주기업이 해당 지역주민의 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내용의 규정이 존재함.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과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 연계하는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 및 시장·군수는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작성하는 협약에 제1항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²⁾가 있으며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반면, 개정안은 민간기업까지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음.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를 줄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며, 세제 혜택 등³⁾을 받는 기업도시 입주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적이 우수한 이전공공기관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6조(세제 및 자금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그 부지의 조성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의 채용 과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지방에 입주한 민간기업에게 법령상 인센티브 대비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574

참고 1

기업도시 입주(예정) 기업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추진현황	
국 토 부 소 관	① 충 주	면적, 기간	700.9만㎡, 2007~2012년 (6,352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충주기업도시(주) 출자사 : 포스코건설, 글로웨이, LH, 현대엔지니어링, 동화약품 등
		도입시설	첨단산업연구단지, 물류센터, 종합레포츠시설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7.4), 착공('08.6), 준공('12.12) 분양율 : 99.5% 입주율 : 100%(23개사 입주완료)
	② 원 주	면적 · 기간	528만㎡, 2007~2019년 (10,459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원주기업도시(주), 출자사 : 롯데건설, 경남기업, 금강산업(주), 기은센엠에이치, IBK투자증권 등
		도입시설	첨단의료단지, 첨단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7.4), 착공('08.7), 준공('19.9), 청산('25.1) 분양율 : 100% 입주율 : 81%(52개사중 42개사 입주완료)
문 체 부 소 관	③ 태 안	면적 · 기간	1,546만㎡, 2006~2025년 (12,982억원)
		시행사, 출자사	시행사 : 현대도시개발(주) 출자사 : 현대건설(주)
		도입시설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첨단복합단지, 테마파크,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추진현황	개발계획 승인('06.12), 착공('07.10), 공정률 : 60.9% 분양률 : 31.6% 입주율 : 45.3% (골프장 4, 골프장 지원시설, 관광숙박시설 2, 화훼보존 화센터, 한국타이어, 무인조종연구단지,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수소튜브검사시설)
	④ 영 암 · 해 남	면적 · 기간	전체 3,390만㎡ (삼호지구) 865만㎡, 2009~2025 (5,534억원) (구성지구) 2,090만㎡, 2006~2025 (21,387억원) (삼포지구) 423만㎡, 2008~2028 (5,560억원)
		시행사, 출자사	(삼호지구) 시행사 : 서남해안레저(주), 공정률 : 20.5% 출자사 : 에이스투자, 한국관광공사, 전남도 등 (구성지구) 시행사 : 서남해안기업도시(주), 공정률 : 33.6% 출자사 :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보성산업(주), ㈜한양 등 (삼포지구) 시행사 : KAVO(주), 전남개발공사, 목포도시가스(주) 공정률 : 38.47% 출자사 : 목포도시가스(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
		도입시설	(삼호) 골프장, 콘도, 마리나, 리조트, 허브테마 등 (구성) 테마파크, 마리나,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삼포) F1경주장, 산업시설, 상업·업무시설, 문화, 복합시설 등
		추진현황	- 삼호지구 : 개발계획승인('09), 착공('14.7), 공유수면매립지 준공('18.4), 골프장(1개소, 63홀) 사용승인('19.10~'23.3) - 구성지구 : 개발계획승인('10), 공유수면매립준공('17.8), 1-2단계 준공('19.12,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1-3단계 준공('21.07, 골프장 외), 2-1단계 준공('23.10, 휴양3) - 삼포지구 : 개발계획승인('10), 1단계 F1경기장으로 사용 중 실시계획승인('25), 2단계 매립공사 추진 중

참고 2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구 분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정주체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국가지자체·공기업·지방공기업·JDC 등은 민간기업과 협의 필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조세 감면	지원 대상	사업시행자	<u>기업도시 내</u> <u>창업·신설기업</u>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소득세	·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법인세 - 종전부동산 양도차익 5년 과세이연, 5년 균납
	지방세	· 취득세·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감면	· 취득세·재산세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 감면	· 취득세 - 이전공공기관 : 50%감면 - 임직원(1세대1주택) · 85m ² 이하 : 100%감면 · 85m ² ~102m ² : 75%감면 · 102m ² 초과 : 62.5%감면 · 등록세 : 100% 감면 · 재산세 : 50%(5년) 감면
입지 지원	지원 사항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감면(∼20%)		· 국유지 임대료 감면 (임대료 100% 이내) · 이전비용 일부지원 (이차보전, 2%, 3년간)
기반 시설	지원 사항	· 진입도로 건설비의 50%		· 주진입도로 1개소 100% · 광역상수도 30%(수공 70%) · 지방상수도 100%
규제특례		· 외국교육기관설립 허용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150% 범위 내 완화		·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우선지정 · 외국인 교원임용
지원센터 운영		×		○